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8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정성호·복기왕·김정호

주철현 • 박희승 • 김남희

이병진 · 이연희 · 김병주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③
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	
로서 예정가격이 <u>100억원</u> 미만	<u>300억원</u>
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